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동보장구 사용 교육 및 보험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 진성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4929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은 호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3
-----------------	---

I. 개요

1. 진성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4929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진성준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2. 4.

(3) 회 부 일 : 2025. 12. 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소지자는 2005년 2만 2,517명에서 2020년 14만 2,547명으로 약 6.3배 증가하는 등 그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이처럼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지만 해당 보조기기 사용자를 위한 안전교육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또한 해당 보조기기 사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역시 미비한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사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이 해당 보조기기 사용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안전하게 전동휠

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호 및 제7조의2 신설).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전동보장구 사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동보장구 사용 중 발생한 사고의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호 및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제7조(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바퀴형 이동 보조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용 교육</u>
4. (생략) <u><신설></u>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7조의2(<u>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등</u>) ① <u>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등이 전동보장구 사용</u>

	<u>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u> <u>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험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	--

2. 검토의견

□ 현행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 대한 특례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하여 급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장애인이 개인 이동용 보조기기(전동휠체어 또는 전동 스쿠터 포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고 있음.

「건강보험법」

제51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①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이하 이 조에서 “보조기기”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의료급여법」

제13조(장애인 및 임산부에 대한 특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이하 이 조에서 “보조기기”라 한다)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보조기기의 종류) 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개인 치료용 보조기기
2. 기술 훈련용 보조기기
3. 보조기 및 의지(義肢)
4. 개인 관리 및 보호용 보조기기
5. 개인 이동용 보조기기
6. 가사용 보조기기
7. 가정·주택용 가구 및 개조용품
8. 의사소통 및 정보전달용 보조기기
9. 물건 및 기구 조작용 보조기기
10. 환경 개선 및 측정용 보조기기
11. 고용 및 직업훈련용 보조기기
12. 레크리에이션용 보조기기
1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장애인등을 위한 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기

□ 최근 3년간 장애인에게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의해 급여로 지급된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는 2022년 12,529건, 2023년 11,173건,
2024년에는 13,507건으로,

매년 상당한 규모의 전동보장구가 새롭게 보급되고 있는 추세임.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급여 현황>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전 동 휠 체 어	건강보험	1,969건	건강보험	1,745건	건강보험	1,804건
	의료급여	1,628건	의료급여	1,561건	의료급여	1,989건
전 동 스 쿨 터	건강보험	6,270건	건강보험	5,340건	건강보험	6,243건
	의료급여	2,662건	의료급여	2,527건	의료급여	3,471건
합계	12,529건		11,173건		13,507건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은 전동보장구 사용 교육 및 사고 시 피해자 보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 가입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 관련 연구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이용자의 70.6%(120명)가 평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며, 67.6%(115명)는 전동휠체어 관련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보고되었으며,¹⁾
- 도로교통공단이 전동휠체어·휠체어 이용 장애인 4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73.8%(315명)가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위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²⁾

□ 참고로, 전동보장구 보험과 관련, 이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등

1) 권성철, & 권창희. (2022). 장애인 전동휠체어 교통안전에 관한 연구. 통합자연과학논문집, 83-87.

2) 도로교통공단. (2023. 4. 20.). 전동휠체어·휠체어 이용 장애인 4명 중 3명 “교통사고 날 뻔한 경험”. 보도자료.

107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참고자료 1: 조례 제정 현황), 실제로 5개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도 104개에 이르고 있음.(참고자료 2: 지방자치단체 보험계약 현황).

<전동보장구 사고 주요 보상 사례>

구분	보험지급일	사고 내용	보험금
삼성	2024년 11월 6일	피보험자가 전동스쿠터를 운행하여 이동 중 후진하면서 뒤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힌 사고	3,000,000원
KB	2024년 7월 29일	전동휠체어 운전미숙으로 행인과 충돌한 사고	1,989,000원
한화	2025년 8월 22일	피보험자가 이동식 의료기기를 운전하여 이동하던 과정에서 피해자와 충돌하여 신체상해가 발생한 사고	11,629,000원
DB	2024년 3월 8일	전동기기 운전 중, 앞에 가는 피해자와 충돌한 사고	18,970,000원

자료: 손해보험협회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개정안은 ‘전동보장구 사용 교육’을 현행법 제7조(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14조에서는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업무로 ‘보조기기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를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지역보조기기센터에서는 전동보장구 사용 교육을 포함한 보조기기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³⁾ 전동보장구 사용 교육은 이미 현행 법체계 내에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음.

개정안	현행법
제7조(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4.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바퀴형 이동보조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용 교육 5. 그 밖에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14조(지역보조기기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보조기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관련 상담·평가·적용·자원 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전시·체험장 운영 3. 보조기기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4.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5. 보조기기 장기 및 단기 대여, 수리, 맞춤 개조와 제작, 보완 및 재사용 사업 6.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 교부 등에 관한 협조 7. 중앙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협력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둘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과 관련한 제7조의2제1항에서 “전동보장구 사용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즉 피해자에 대한 보상(제3자배상책임)으로만 보험의 보장 내용을 특정하고 있는데,⁴⁾

이러한 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수요,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보험의 보장범위·유형을 설계할 수 있는 재량을 사전에 제한할 우려가 있음.

3)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지역보조기기센터에서는 전동보장구 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4) 이 경우, 장애인 본인의 상해 또는 전동보장구 자체의 손·망실 등에 대한 보상은 보상 범위에서 제외됨.

따라서, 보험 가입의 근거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구체적인 보장 범위와 계약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현행법 제14조에 따른 지역보조기기센터 업무 중 제3호에 보조기기 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지역보조기기센터별로 지역 내 장애인 대상 전동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 사고예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제7조에 별도 규정을 신설할 개정 실익이 낮다고 판단됨.
- 또한, 장애인등 대상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재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개정의 실익이 낮다고 판단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보험 가입 비용 지원 규정 신설의 경우 추가적인 국가 재정 소요가 발생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조례 제정 현황_107개〉

기준: 2025.12.

구분	조례 제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시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속초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주시 장애인등 전동이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경기도 광명시	광명시 장애인·노인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경기도 구리시	구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경기도 군포시	군포시 장애인·노인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시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장애인·노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경기도 안양시	안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경기도 여주시	여주시 장애인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경기도 연천군	연천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경기도 오산시	오산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시 장애인·노인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경기도 이천시	이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경기도 포천시	포천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경기도 하남시	하남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시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증진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울산광역시 동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장애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시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료 지원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남원시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군 노인·장애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충청남도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서산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수리비 지원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료 지원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참고자료 2: 지방자치단체 보험계약 현황_104개>

기준: 2025.12.1.유효계약

보험회사	지방자치단체	보험상품	보험료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삼성	포천시청	휠체어 및 스쿠터 배상책임 보험	7,217,300원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는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제3자배상책임 (3,000만원)
	남양주시청	휠체어 및 스쿠터 배상책임 보험	16,146,900원	해당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는 등록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노인	제3자배상책임 (3,000만원)
	남원시청	휠체어 및 스쿠터 배상책임 보험	15,779,200원	해당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는 등록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노인	제3자배상책임 (7,000만원)
	동작구청	휠체어 및 스쿠터 배상책임 보험	8,049,300원	해당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는 등록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노인(+국가유공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는 나이불문포함)	제3자배상책임 (2,000만원)
	태안군청	휠체어 및 스쿠터 배상책임 보험	3,561,900원	해당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는 등록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노인(+국가유공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는 나이불문포함)	제3자배상책임 (2,000만원)
	정선군청	휠체어 및 스쿠터 배상책임 보험	1,570,500원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등록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운행하는자	제3자배상책임 (2,000만원)

보험회사	지방자치단체	보험상품	보험료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농협	합천군청	단체상해보험	5,686,650원	• 군민	전동보조기기 사고 부상치료비 1급~10급(10,20,30,40,50,60,70,80,90,100만원)
	화순군청	단체상해보험	88,130,270원	• 군민	전동보조기기 사고 부상치료비 1급~10급(10,20,30,40,50,60,70,80,90,100만원)
	남해군청	단체상해보험	98,506,510원	• 군민	전동보조기기 사고 부상치료비 1급~10급(10,20,30,40,50,60,70,80,90,100만원) 개인이동수단 배상책임담보(1,000만원)
KB	진천군청	휠체어 및 스쿠터배상책임보험	2,906,500원	•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동보조기기(전공스쿠터, 전동휠체어)를 운영중인 자	제3자배상책임 (사고당 3,000만원)
	안양시청	시민안전상해보험	4,035,169원	• 시민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사고 부상치료비 (1급:1천만원~14급10만원)
한화	의왕시청	휠체어 및 스쿠터배상책임보험	4,976,100원	• 지자체 내 주민등록된 운전자	제3자배상책임 (5,000만원)
	부산광역시 서구청	휠체어 및 스쿠터배상책임보험	3,492,000원	• 지자체 내 주민등록된 운전자	제3자배상책임 (5,000만원)

보험회사	지방자치단체	보험상품	보험료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부산광역시 동구청	휠체어 및 스쿠터 배상책임 보험	4,626,900원	• 지자체 내 주민등록된 운행자	제3자배상책임 (5,000만원)
	순창군청	휠체어 및 스쿠터 배상책임 보험	8,531,600원	• 지자체 내 주민등록된 운행자	제3자배상책임 (3,000만원)
	증평군청	휠체어 및 스쿠터 배상책임 보험	1,195,200원	• 지자체 내 주민등록된 운행자	제3자배상책임 (2,000만원)
	양산시청	휠체어 및 스쿠터 배상책임 보험	9,483,300원	• 지자체 내 주민등록된 운행자	제3자배상책임 (2,000만원)
	옥천군청	휠체어 및 스쿠터 배상책임 보험	7,225,000원	• 지자체 내 주민등록된 운행자	제3자배상책임 (2,000만원)
	사천시청	휠체어 및 스쿠터 배상책임 보험	5,925,000원	• 지자체 내 주민등록된 운행자	제3자배상책임 (2,000만원)
	정읍시청	휠체어 및 스쿠터 배상책임 보험	19,497,800원	• 지자체 내 주민등록된 운행자	제3자배상책임 (3,000만원)
	창원시청	휠체어 및 스쿠터 배상책임 보험	19,631,000원	• 지자체 내 주민등록된 운행자	제3자배상책임 (5,000만원)
	중랑구청	휠체어 및 스쿠터 배상책임 보험	16,450,000원	• 지자체 내 주민등록된 운행자	제3자배상책임 (2,000만원)

보험회사	지방자치단체	보험상품	보험료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강북구청	휠체어 및 스쿠터 배상책임 보험	18,753,000원	• 지자체 내 주민등록된 운행자	제3자배상책임 (3,000만원)
	밀양시청	휠체어 및 스쿠터 배상책임 보험	10,725,700원	• 지자체 내 주민등록된 운행자	제3자배상책임 (3,000만원)
	괴산군청	휠체어 및 스쿠터 배상책임 보험	2,725,000원	• 지자체 내 주민등록된 운행자	제3자배상책임 (2,000만원)
	순천시청	휠체어 및 스쿠터 배상책임 보험	18,753,000원	• 지자체 내 주민등록된 운행자	제3자배상책임 (3,000만원)
	달성군청	휠체어 및 스쿠터 배상책임 보험	11,544,400원	• 지자체 내 주민등록된 운행자	제3자배상책임 (3,000만원)
	은평구청	휠체어 및 스쿠터 배상책임 보험	13,565,900원	• 지자체 내 주민등록된 운행자	제3자배상책임 (5,000만원)
	화순군청	휠체어 및 스쿠터 배상책임 보험	6,763,700원	• 지자체 내 주민등록된 운행자	제3자배상책임 (5,000만원)
	청도군청	휠체어 및 스쿠터 배상책임 보험	10,928,900원	• 지자체 내 주민등록된 운행자	제3자배상책임 (5,000만원)
	전주시청	휠체어 및 스쿠터 배상책임 보험	39,987,900원	• 지자체 내 주민등록된 운행자	제3자배상책임 (5,000만원)

보험회사	지방자치단체	보험상품	보험료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종로구청	휠체어 및 스쿠터 배상책임 보험	3,278,000원	• 지자체 내 주민등록된 운행자	제3자배상책임 (5,000만원)
	세종특별자치시청	휠체어 및 스쿠터 배상책임 보험	7,368,200원	• 지자체 내 주민등록된 운행자	제3자배상책임 (3,000만원)
	성남시청	휠체어 및 스쿠터 배상책임 보험	18,958,800원	• 지자체 내 주민등록된 운행자	제3자배상책임 (2,000만원)
	하남시청	휠체어 및 스쿠터 배상책임 보험	6,275,000원	• 지자체 내 주민등록된 운행자	제3자배상책임 (2,000만원)
	이천시청	휠체어 및 스쿠터 배상책임 보험	7,358,000원	• 지자체 내 주민등록된 운행자	제3자배상책임 (5,000만원)
	장성군청	휠체어 및 스쿠터 배상책임 보험	8,827,500원	• 지자체 내 주민등록된 운행자	제3자배상책임 (3,000만원)
	담양군청	휠체어 및 스쿠터 배상책임 보험	5,000,000원	• 지자체 내 주민등록된 운행자	제3자배상책임 (2,000만원)
	서천군청	휠체어 및 스쿠터 배상책임 보험	4,850,000원	• 지자체 내 주민등록된 운행자	제3자배상책임 (2,000만원)
	경산시청	휠체어 및 스쿠터 배상책임 보험	12,400,000원	• 지자체 내 주민등록된 운행자	제3자배상책임 (2,000만원)

보험회사	지방자치단체	보험상품	보험료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당진시청	휠체어 및 스쿠터 배상책임 보험	7,725,000원	• 지자체 내 주민등록된 운행자	제3자배상책임 (2,000만원)
	서산시청	휠체어 및 스쿠터 배상책임 보험	4,750,000원	• 지자체 내 주민등록된 운행자	제3자배상책임 (2,000만원)
	홍성군청	휠체어 및 스쿠터 배상책임 보험	5,100,000원	• 지자체 내 주민등록된 운행자	제3자배상책임 (2,000만원)
	강남구청	휠체어 및 스쿠터 배상책임 보험	16,232,200원	• 지자체 내 주민등록된 운행자	제3자배상책임 (5,000만원)
	청양군청	휠체어 및 스쿠터 배상책임 보험	7,650,000원	• 지자체 내 주민등록된 운행자	제3자배상책임 (2,000만원)
	속초시청	휠체어 및 스쿠터 배상책임 보험	2,101,400원	• 지자체 내 주민등록된 운행자	제3자배상책임 (3,000만원)
	공주시청	휠체어 및 스쿠터 배상책임 보험	7,800,000원	• 지자체 내 주민등록된 운행자	제3자배상책임 (2,000만원)
	고성군청	휠체어 및 스쿠터 배상책임 보험	5,225,000원	• 지자체 내 주민등록된 운행자	제3자배상책임 (2,000만원)
	광주광역시 동구청	휠체어 및 스쿠터 배상책임 보험	3,125,000원	• 지자체 내 주민등록된 운행자	제3자배상책임 (2,000만원)

보험회사	지방자치단체	보험상품	보험료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강동구청	휠체어 및 스쿠터 배상책임 보험	14,896,000원	• 지자체 내 주민 등록된 운행자	제3자배상책임 (3,000만원)
	예산군청	휠체어 및 스쿠터 배상책임 보험	7,400,000원	• 지자체 내 주민 등록된 운행자	제3자배상책임 (2,000만원)
	보령시청	휠체어 및 스쿠터 배상책임 보험	6,975,000원	• 지자체 내 주민 등록된 운행자	제3자배상책임 (2,000만원)
	거제시청	휠체어 및 스쿠터 배상책임 보험	2,900,000원	• 지자체 내 주민 등록된 운행자	제3자배상책임 (2,000만원)
DB	강서구청	프로미 휠체어 배상책임보험	41,353,300원	• 지자체 주민	제3자배상책임 (5,000만원)
	강화군청	프로미 휠체어 배상책임보험	5,150,100원	• 지자체 주민	제3자배상책임 (5,000만원)
	과천시청	프로미 휠체어 배상책임보험	1,838,400원	• 지자체 주민	제3자배상책임 (5,000만원)
	관악구청	프로미 휠체어 배상책임보험	16,076,800원	• 지자체 주민	제3자배상책임 (5,000만원) 변호사선임비용(500만원)
	광명시청	프로미 휠체어 배상책임보험	8,555,100원	• 지자체 주민	제3자배상책임 (5,000만원)
	광양시청	프로미 휠체어 배상책임보험	8,359,600원	• 지자체 주민	제3자배상책임 (2,000만원)
	광진구청	프로미 휠체어 배상책임보험	7,378,800원	• 지자체 주민	제3자배상책임 (5,000만원)

보 험 회 사	지 방 자 치 단 체	보 험 상 품	보 험 료	피 보 험 자	보 험 가 입 금 액
	구로구청	프로미 할채어 배상책임보험	13,748,700원	• 지자체 주민	제3자배상책임 (5,000만원)
	구리시청	프로미 할채어 배상책임보험	6,838,600원	• 지자체 주민	제3자배상책임 (2,000만원)
	군포시청	프로미 할채어 배상책임보험	8,903,400원	• 지자체 주민	제3자배상책임 (5,000만원)
	금산군청	프로미 할채어 배상책임보험	8,771,500원	• 지자체 주민	제3자배상책임 (2,000만원)
	금천구청	프로미 할채어 배상책임보험	14,089,600원	• 지자체 주민	제3자배상책임 (5,000만원)
	김해시청	프로미 할채어 배상책임보험	17,227,900원	• 지자체 주민	제3자배상책임 (5,000만원)
	나주시청	프로미 할채어 배상책임보험	7,298,200원	• 지자체 주민	제3자배상책임 (2,000만원)
	남동구청	프로미 할채어 배상책임보험	20,544,900원	• 지자체 주민	제3자배상책임 (5,000만원)
	노원구청	프로미 할채어 배상책임보험	36,156,100원	• 지자체 주민	제3자배상책임 (5,000만원)
	논산시청	프로미 할채어 배상책임보험	12,001,400원	• 지자체 주민	제3자배상책임 (2,000만원)
	대전광역시 중구청	프로미 할채어 배상책임보험	19,417,400원	• 지자체 주민	제3자배상책임 (5,000만원) 변호사선임비 용(500만원)
	도봉구청	프로미 할채어 배상책임보험	15,280,400원	• 지자체 주민	제3자배상책임 (5,000만원)

보험 회사	지 방 자 치 단 체	보 험 상 품	보 험 료	피 보험 자	보 험 가 입 금 액
	동 두 천 시 청	프로미 할체어 배상책임보험	6,470,100원	• 지자체 주민	제3자배상책임 (2,000만원)
	마 포 구 청	프로미 할체어 배상책임보험	14,239,400원	• 지자체 주민	제3자배상책임 (5,000만원) 변호사선임비 용(500만원)
	부 여 군 청	프로미 할체어 배상책임보험	13,850,200원	• 지자체 주민	제3자배상책임 (2,000만원) 변호사선임비 용(500만원)
	부 평 구 청	프로미 할체어 배상책임보험	26,620,600원	• 지자체 주민	제3자배상책임 (5,000만원)
	서 대 문 구 청	프로미 할체어 배상책임보험	8,345,100원	• 지자체 주민	제3자배상책임 (5,000만원)
	서울특별시 중 구 청	프로미 할체어 배상책임보험	4,485,800원	• 지자체 주민	제3자배상책임 (5,000만원)
	서 초 구 청	프로미 할체어 배상책임보험	5,794,700원	• 지자체 주민	제3자배상책임 (5,000만원) 변호사선임비 용(500만원)
	성 동 구 청	프로미 할체어 배상책임보험	7,618,400원	• 지자체 주민	제3자배상책임 (3,000만원)
	성 북 구 청	프로미 할체어 배상책임보험	9,718,000원	• 지자체 주민	제3자배상책임 (3,000만원)
	송 파 구 청	프로미 할체어 배상책임보험	13,281,800원	• 지자체 주민	제3자배상책임 (5,000만원)
	시 흥 시 청	프로미 할체어 배상책임보험	11,623,000원	• 지자체 주민	제3자배상책임 (2,000만원)

보험 회사	지 방 자 치 단 체	보 험 상 품	보 험 료	피 보험 자	보 험 가 입 금 액
	아 산 시 청	프로미 할체어 배상책임보험	13,908,700원	• 지 자 체 주 민	제3자배상책임 (5,000만원) 변 호 사 선 임 비 용(500만원)
	양 천 구 청	프로미 할체어 배상책임보험	16,463,000원	• 지 자 체 주 민	제3자배상책임 (3,000만원)
	영 등 포 구 청	프로미 할체어 배상책임보험	16,953,700원	• 지 자 체 주 민	제3자배상책임 (5,000만원)
	영 천 시 청	프로미 할체어 배상책임보험	9,541,700원	• 지 자 체 주 민	제3자배상책임 (2,000만원)
	웅 진 군 청	프로미 할체어 배상책임보험	1,217,900원	• 지 자 체 주 민	제3자배상책임 (5,000만원)
	용 산 구 청	프로미 할체어 배상책임보험	5,043,200원	• 지 자 체 주 민	제3자배상책임 (5,000만원) 변 호 사 선 임 비 용(500만원)
	울산광역시 남 구 청	프로미 할체어 배상책임보험	8,725,700원	• 지 자 체 주 민	제3자배상책임 (5,000만원)
	울산광역시 동 구 청	프로미 할체어 배상책임보험	4,191,600원	• 지 자 체 주 민	제3자배상책임 (5,000만원)
	유 성 구 청	프로미 할체어 배상책임보험	11,019,900원	• 지 자 체 주 민	제3자배상책임 (3,000만원)
	음 성 군 청	프로미 할체어 배상책임보험	5,815,600원	• 지 자 체 주 민	제3자배상책임 (5,000만원)
	의 정 부 시	프로미 할체어 배상책임보험	19,615,900원	• 지 자 체 주 민	제3자배상책임 (2,000만원)
	인천광역시 계 양 구 청	프로미 할체어 배상책임보험	9,426,800원	• 지 자 체 주 민	제3자배상책임 (5,000만원)
	인천광역시 동 구 청	프로미 할체어 배상책임보험	3,549,400원	• 지 자 체 주 민	제3자배상책임 (5,000만원)

보험 회사	지방자치 단체	보험상품	보험료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프로미 휠체어 배상책임보험	0,648,200원	• 지자체 주민	제3자배상책임 (5,000만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프로미 휠체어 배상책임보험	11,775,700원	• 지자체 주민	제3자배상책임 (5,000만원)
	인천광역시 중구청	프로미 휠체어 배상책임보험	3,445,000원	• 지자체 주민	제3자배상책임 (5,000만원)
	인천광역시 서구청	프로미 휠체어 배상책임보험	14,876,200원	• 지자체 주민	제3자배상책임 (5,000만원)
	천안시청	프로미 휠체어 배상책임보험	19,461,800원	• 지자체 주민	제3자배상책임 (2,000만원)
	청주시청	프로미 휠체어 배상책임보험	15,407,300원	• 지자체 주민	제3자배상책임 (2,000만원)
	충주시청	프로미 휠체어 배상책임보험	10,379,600원	• 지자체 주민	제3자배상책임 (2,000만원)
	포항시청	프로미 휠체어 배상책임보험	16,975,000원	• 지자체 주민	제3자배상책임 (2,000만원)

주1): 장애인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담보하는 보험 중, 보험계약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계약
자료: 손해보험협회